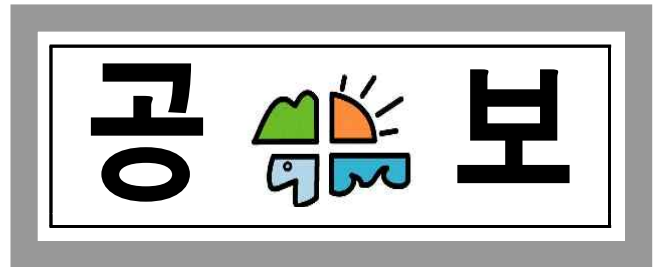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21호 2021년 4월 16일(금)

훈 령

-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63호선, 소로2-4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 속초 도시관리계획(장사1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4

공 고

- 속초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도로) 결정(안) 공람·공고 7
-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8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9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4월 12일

속 초 시 장 김 철 수 인

속초시 훈령 제753호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을 “속초시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설악동”을 “속초시 설악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악동”을 “속초시 설악동”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관광과장, 설악동 5개 단체장(설악동번영회장, 설악동재개발추진위원장)”을 “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설악동 3개 단체장(설악동번영회장)”으로, “설악동종합상가연합회장, 설사모회장”을 “설악동건물주협회장”으로, “시장”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2명 내외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을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고시 제2021-43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63호선, 소로2-4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63호선, 소로2-4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3	6	국지 도로	241	청학 486-321도	청학 640-3도	일반 도로	1987. 2. 17. (속고 제87-12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3	63	6	국지 도로	241	청학 486-321도	청학 640-3도	일반 도로	1987. 2. 17. (속고 제87-12호)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153	광로 3-1 교동 690-16대	중로1-11 교동 673-27	일반 도로	1976. 3. 27. (강고 제77-72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2	46	8	국지 도로	153	광로 3-1 교동 690-16대	중로1-11 교동 673-27	일반 도로	1976. 3. 27. (강고 제77-72호)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63	소로3-63	◦ 선형변경	◦ 현황여건에 맞추어 도로선형 일부 조정
변경	소로2-46	소로2-46	◦ 선형변경	◦ 현황여건에 맞추어 도로선형 일부 조정

속초시 고시 제2021-45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장사1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1-36(2021. 3. 25.)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속초 도시관리계획 (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4월 16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2	장사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788	감) 367	39,421	속초시고시 제2019-23호 (2019. 4. 12)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변경	42	속초시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421	◦ 지적 경계측량에 따른 공부면적 정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788	감)367	39,421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788	감)367	39,421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m ²)		면 적(m ²)	용 적 륜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속초시 장사동 산 278-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9,421	100% 이하	◦ 지적 경계측량에 따른 공부면적 정정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788	감) 367	39,421	
A	공동주택용지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788	감) 367	39,421	

■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구 분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39,788	감) 367	39,421	
A	공동주택용지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788	감) 367	39,421	
A-1	공동주택	장사동 산278-7번지 일원	39,788	감) 367	39,42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결정내용
A-1	속초시 장사동 산 278-7번지 일원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롭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형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색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 유도 ◦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속초시 공고 제2021-402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도로) 결정(안) 공람·공고

1.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속초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및 도로) 결정(안) 공람·공고

나. 공고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및 도로) 신설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사용형태	비 고
4	노외주차장	주기장	조양동 산41-2도 일원	4,600	공영주기장	신 설

- 도로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A	7	국지 도로	192	소로1-18 조양 1480-313대	소로2-100 조양 1463-43전	일반도로	신 설

다. 공람기간: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라. 공람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033-639-2447)

마. 관계도서: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바.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7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6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조양동 1480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7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1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속초시장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도로	소로1-17호선	B=10m, L=481m	B=10m, L=31.5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04. 30.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04. 16. ~ 2021. 04. 30.
 - 장소: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사항	
1	조양동	1480	도	18,384	318	속초시					
2		1463-8	전	930	14	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6, 11**호				
합계				19,314	332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① 2. 공고기간 : 2021. 04. 15. ~ 2021. 04. 29.

②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행위자 (관리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달불능 사유
이진○	영랑동 204-1번지	불법 증축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폐문 부재

6. 유의사항

- 귀하께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출처 : 속초시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제기 : 강원도
 - 행정소송 제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행강제금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속초시 건축과(☎ 033-639-2685)로 방문 또는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끝.

2021. 04. 15.

속 초 시 장